

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

안녕하십니까? 교통위원회 김상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교통위원회 선배, 동료의원들 앞에서 “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정부가 고장 및 사고차량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 정비업자 등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은 구난형 특수자동차(레커차)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를 시·도지사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지난 2016년 1월 19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일부 개정하여 시행 중에 있는 사항을 동 조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동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